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에 대한 정비사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훼손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거나 이를 혼용하는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까지 가능하게 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면적 1,200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법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 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장 관** 김 현 미

●대통령령 제301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 ② 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별표 3 제2호가목의 표의 비고 외의 부분에 제28호의2 및 제2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호의2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28의3.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3호의3	사업일부정지 (10일)	사업일부정지 (20일)	사업일부정지 (30일)

별표 5 제1호의 표의 비고 외의 부분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호의2	1차	60	60	60		
		2차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20의3. 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5조제1항제23호의3	1차	60	60	60		
		2차	120	120	120		
		3차 이상	180	180	18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일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의 분실·도난·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정하고,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에 영상기록에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 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10월 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진 영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0105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등록”을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별표 4”를 “별표 4 제1호 및 제3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4 제1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험회사등은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하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 ④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는 별도로 별표 4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 보험협회는 매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을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등은 불완전 판매 건수 등 보험협회가 교육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9조의2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이력 및 자동차 기준가액”을 “이력, 자동차 기준가액 및 자동차 주행거리”로 한다.

제102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 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별표 3 제2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 중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란 나목 중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교육기준(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별표 4 제1호의 제목 중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을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에 따른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6년까지 발급한다. 다만, 제철공정,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공급인증서의 발급기한을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6년까지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바이오중유가 신·재생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등을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등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6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나”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중 “제44조의4”를 “제45조”로 한다.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2.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 ②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1.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
2.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할 것.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영상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제100조 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정하여야”를 각각 “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하여야”를 “집행해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로 한다.

제103조 제4호 다목 및 같은 조 제4호의2 다목 중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을 각각 “6년)을 초과하지 않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 서식부터 별지 제22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